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함.(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해석을 잘 못한 것 아닌가?</p>	<p>○ 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주민생활지원과장)</p>
<p>○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는 법령상 규정은 자원봉사센터 설립 주체가 법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p>	<p>○ 위탁 운영주체가 법인이므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주민생활지원과장)</p>
<p>○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인적 구성이나 기능이 다르다.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는데?</p>	<p>○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특성상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주민생활지원과장)</p>
<p>○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설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안건들에 대해 법인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것인가?</p>	<p>○ 조례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자 않고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음.(주민생활지원과장)</p>
<p>○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가?</p>	<p>○ 위원회 정비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법리해석 등을 다시 검토하겠음.(주민생활지원국장)</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적용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15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안년월일 : 2008. 10. 16.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탁 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 못 적용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현행 조례 대로 수정함.(안 제8조 5항 내지 6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안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 -----.</p> <p>1. “자원봉사활동”이란 ----- ----- -----대가 없이----- ----- -----..</p> <p>2. “자원봉사자”란 ----- -----.</p> <p>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p> <p>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 -----조례 등에 따라----- -----.</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부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p>	<p>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p>	<p>제6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p>	<p>제6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④ -----1명----- ----- -----.	④(개정안과 같음)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중전의 제7항)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제9조에 따른 경비를----- -----해당----- -----1개월-----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p> <p>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각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p>제18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로 하고, “조례 등에 의하여”를 “조례 등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부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센터 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을 “센터의 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을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을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방법에 의하여”을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을 “센터의 장을 선임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 하고, “직접 운영”을 “직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을 “위탁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 경비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로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계약은 자원봉사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각각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로 하고, “조례 등에 의하여”를 “조례 등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부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센터 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을 “센터의 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을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을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방법에 의하여”을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을 “센터의 장을 선임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 하고, “직접 운영”을 “직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을 “위탁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 경비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로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계약은 자원봉사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각각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p> <p>1. “자원봉사활동”이란----- ----- -----<u>대</u> <u>가 없이</u>----- -----.</p> <p>2. “자원봉사자”란----- -----.</p> <p>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u>활동</u>-----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에 따라 등록된 법인</u>----.</p> <p>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 <u>활동의</u>----- ----- -----<u>조례 등에 따라</u>----- -----.</p>
<p>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u>부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u> <u>터”라 한다)</u>-----.</p>
<p>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p>	<p>제6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u>방법</u> <u>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u>---</p>

현행	개정안
<p>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u>방법에 의하여</u>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p> <p>②시장이 <u>센터 장을 선임하고자</u>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p> <p>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u>법인으로 하여</u>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u>직접 운영</u>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u>위탁하고자 할 경우</u>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센터를 <u>법인으로 하여</u>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u>그 밖의 경우에는</u>----- -----<u>방법에 따라</u>----- ----- -----.</p> <p>② -----<u>센터의 장을 선임할</u> ----- -----.</p> <p>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u>법인으로</u>----- ----- ----- ----- ----- -----<u>직영</u>-----.</p> <p>② -----<u>위탁할 경우에는</u>----- ----- ----- ----- ----- -----.</p> <p>③-----<u>법인으로</u>----- ----- ----- ----- ----- -----.</p>

현행	개정안
<p>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p>	<p>④ -----1명----- ----- -----.</p>
<p>⑤~⑦ (생략)</p>	<p>⑤~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p>	<p>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p>
<p>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① ----제9조에 따른 경비를-- ----- -----해당----- -----1개월-----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p>
<p>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p>	<p>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 ----- ----- -----.</p>
<p>1.~5. (생략)</p>	<p>1.~5. (현행과 같음)</p>
<p>제14(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14(포상) -----국가와 사회발전 전에 현저한 공로로 인정되는- ----- ----- -----.</p>

현행	개정안
<p>제16(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각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각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 	<p>제16(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계약은 자원봉사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각각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시행에----- -----.</p>